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8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년 3월 29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대항 권한으로 ‘이의제기’와 ‘이의신청’을 규정하고 있는데, ‘이의신청’은 약식재판에 대한 대항권이며 ‘이의제기’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‘이의신청은’을 ‘이의제기는’으로 함 (안 제33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3조제2항 중 ‘이의신청은’을 ‘이의제기는’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사람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>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이의제 기는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 제목“(과태료)”를“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과태료)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<u>자</u>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3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대한</u> <u>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</u> <u>법」에 따른다.</u></p>